

아리아리! 정선
the mecca of arirang, jeongseon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jeongseon.go.kr/>

제418호 2017. 5. 2. (화)

【공 고】

- 정선군 공고 제2017- 392호 정선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
법예고.....2

□ 발행 : 정선군청 기획감사실 (전화:560-2224, FAX:560-2592)

공 고

정선군 공고 제2017- 392호

「정선군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4월 20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 법 예 고

1. 제 정 이 유

가. 「식물방역법」에 따른 시·군·구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을 반영하여 「정선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 요 내 용

- 가.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설치 및 구성(안 제3조 및 제4조)
- 나.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운영 및 임무(안 제5조 및 제6조)
- 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의 예산지원(안 제8조)
- 라. 병해충 예찰·방제 관련 인력 확보(안 제10조)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5월 10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참조: 기술연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우)26103 정선군 북평면 송석길 146-7
정선군농업기술센터 기술연구과장
- 전 화: 033-560-2375
- F A X: 033-562-3963
- E-mai: njuny@korea.kr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 따라 정선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를 준용한다.
2. “병해충 예찰·방제”란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농작물 병해충(이하 “병해충”이라 한다)에 대한 예찰과 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
3.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물재배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병해충과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제3조(예찰·방제단 설치)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1조의4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예찰과 방제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선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이하 “예찰·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4조(구성) 예찰·방제단은 식물방제관을 포함하되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 반장 2명으로 하고 각 반원을 6명 이내로 구성하며 민간전문가 등을 포함할 수 있다.

1. 단장은 정선군 부군수로 한다.

- 2. 부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 3. 반장은 기술연구과장 1명, 기술연구과 작물지도팀장 1명으로 한다.
- 4. 예찰·방제단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병해충 예찰반과 병해충 기술지원 반을 둔다.

제5조(운영)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하고 중요 방제 대상 병해충 발견시 그 조사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예찰정보를 농업 및 유관기관 등에 제공한다.
- ③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행정기관,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확산 최소화에 노력해야 한다.

제6조(임무) 예찰·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 1. 관내 농경지 병해충 예찰·방제계획 수립
- 2. 병해충 예찰·방제 추진 및 지도·점검
- 3. 중앙, 도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 4.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를 위한 예산·기술 지원
- 5. 병해충 예찰, 방제에 대한 농업인교육 실시
- 6. 병해충 예찰·방제기술 연구 및 홍보
- 7. 그 밖에 병해충 예찰·방제현장 업무 수행 등

제7조(식물방제관) ① 법 제31조의2에 따라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에 수행하기 위해 식물방제관을 둔다.

- ② 식물방제관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도지사의 추천을 받은 공무원 중에서 선발한다.
- ③ 식물방제관은 예찰·방제단에서 법 제31조의3에 따른 권한을 수행한다.

제8조(예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장비, 보조인력 운영, 식물방제관 수당, 국내여비, 방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전문교육) 군수는 군의 병해충 예찰·방제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병해충 예찰·방제기술, 병해충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병해충 분류동정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추진한다.

제10조(전문인력) ① 군수는 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 ② 전문인력은 해당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 전공자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

를 둘 수 있다.

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업무 경력자를 임기제공무원 등으로 채용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